

광주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642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K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욱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15.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1가단512278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한 후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연대보증채무 발생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11. 2. 28. 미화 500,000달러를 한도로 외화지급보증 대출거래약정을, 2011. 2. 26. 신용카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의 아버지 C는 각 650,000달러 및 3,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의 채권양도 및 판결 확정

소외 은행은 2013. 6. 28. 위 각 약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F는 소외 회사 및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76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7.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8. 6. 확정되었다.

1. 원고(F)에게,

가. 피고 소외 회사는

(1) 538,662,433원 및 그 중 470,409,978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0,861,212원 및 그 중 9,552,277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는 피고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1) 미화 650,000달러의 한도 내에서 위 가.(1)항 기재 돈을,

(2)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2)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다. A 주식회사의 판결금 채권 양수

F는 2018. 11. 30.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게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2019. 5. 27.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C의 송금행위 및 A의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C는 2017. 8. 14.부터 2017. 8. 23.까지 5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던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딸인 피고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이에 A는 2021. 3. 29.

피고를 상대로 위 송금행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8. 18. 제1심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26.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C에 대한 파산선고 및 소송절차의 수계

C는 2021. 10. 18.경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6560, 2021하면106560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1. 12. 16. 이 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에 의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고, 2022. 4. 26.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부인권 행사의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2022. 4.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2022.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다른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운영하던 소외 회사는 그 생산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약 20억 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C가 2012. 5.경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기업은행에서 5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15.경 법정구속 되면서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위 법정구속 당시인 2016. 1.경 C는 H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원금만으로도 합계 약 50억 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적극재산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C는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2017. 8.경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의 딸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부인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 C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고, 그 송금행위도 C가 아닌 G(계좌명의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금원의 송금행위는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L이 송금한 30,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G의 재산으로 이를 C의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309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2016. 1. 15.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이 G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G은 1995년경부터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여 왔고, 2017. 2.경부터 2019. 4.경까지 대부분을 외국에 체류하였으며,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에도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었고, C가 구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경제적 처분행위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아버지인 C가 신용불량자로서 계좌 및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의 생활을 위하여 아들 G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의 체크카드를 주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③ A는 C의 구속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금원 중 일부를 G이 부당이득하였음을 이유로 C의 채권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G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12066), 위 법원은 2021. 3. 16. ‘G이 이 사건 계좌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C가 구속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G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위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배척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위 소송에서 G의 소송대리인은 C가 G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2014. 2. 18. 무렵부터 사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계좌에 2014. 1. 2.부터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이 이루어진 2017. 8.경까지 입금된 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 그중 약 2,000만 원(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G의 재산이라거나 그 입금원인이 G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를 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송인경, 판사 김진만, 판사 유상호

별지

증여계약 내역

1. 2017. 8. 14.자 10,000,000원
2. 2017. 8. 18.자 10,000,000원
3. 2017. 8. 21.자 10,000,000원
4. 2017. 8. 22.자 10,000,000원
5. 2017. 8. 23.자 10,000,000원
- 합계 50,000,000원

